

## 전기용품안전인증 Q & A

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.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·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.

〈편집자주〉

**Q** 외국에서 생산된 미용기구의 수입 허가를 위해서는 <전기안전검사> 등 소정의 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외국산 전기 이용 미용기구의 수입 허가를 위해 요구되는 제출 자료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**A** 귀하의 미용기구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는 경우에 동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체가 아래 안전인증기관 중에 선택을 하여 통관 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
▶ 안전인증기관

- 한국전자파연구원 : 031-336-2420
-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: 031-428-7536
- 산업기술시험원 : 02-860-1114

**Q** 저희는 TV 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. 국내 23" LCD TV를 M/S에서 국내 판매점(하이마트, 이마트, 등등)의 전시장에 전시 목적(M/S 게임기 시연 목적)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. 일반 소비자에게는 판매되지 않습니다. 이 때 국내안전인증을 승인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

**A** 문의하신 "전시용 LCD TV"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품목 중 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되므로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더라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.